

#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일시| 2024. 10. 31(목)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윤호중 · 사회적금융포럼  
재단법인 동천 ·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일시| 2024. 10. 31(목)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윤호중 · 사회적금융포럼  
재단법인 동천 ·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목차

## 인사말

윤호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10
유 욱 이사장 · 재단법인 동천	12
송경용 이사장 ·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14

## 축사

이재명 당대표 · 더불어민주당	18
------------------	----

## 발제

김호선 변호사 · 법무법인 더함	22
이희숙 상임변호사 · 재단법인 동천	30

## 토론

이원태 사무국장 · 함께일하는재단	42
전승범 이사 · 임팩트스퀘어 투자총괄	46
최호윤 회계사 · 회계법인 더함	52
박지훈 과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56
임혜성 과장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60

# 프로그램

사회자 : 김영식 이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시 간	내 용
10:00 - 10:15	<p>5분   오프닝   참석자 소개 · 진행 순서 안내</p> <p>10분   인사말   · 윤호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 욱 이사장 (재단법인 동천) · 송경용 이사장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p>
10:15 - 10:45	<p>30분   발제 1   공익법인 사회투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김호선 변호사 (법무법인 더함)</p> <p>  발제 2   공익법인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이희숙 상임변호사 (재단법인 동천)</p>
10:45 - 11:50	<p>50분   토 론     좌 장   · 조상미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p> <p>  지정 토론자   · 이원태 사무국장 (함께일하는재단) · 전승범 이사 (임팩트스퀘어 투자총괄) · 최호윤 회계사 (회계법인 더함) · 박지훈 과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임혜성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p>
	<p>15분   종합 토론  </p>
11:50 - 12:00	<p>10분   질의응답 · 마무리  </p>

##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 인사말

**윤호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유 욱** 이사장 · 재단법인 동천

**송경용** 이사장 ·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윤호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국회의원 윤호중입니다.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늘 공익법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시고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시는 사회적금융포럼 관계기관,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공익법인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복잡다단한 사회문제가 늘어나면서 공익법인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라는 익숙한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직면한 사회문제 대처에 시장도 정부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비롯한 제3섹터의 역할 확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효율성이 요구되는 곳은 시장이,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정부가, 효율과 공공성의 조화가 필요한 곳은 제3섹터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금번 토론회 주제인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역시 그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단순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투자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보자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미비 등으로 활성화까지 아직 많은 허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익법인의 사회투자가 갖는 의의를 짚어보고,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모여 한층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오랜 고민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제언을 해주신 두 분의 발제자 김효선 변호사님, 이희숙 변호사님께 각별히 감사드리며, 좌장을 맡아주신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님, 토론자 다섯 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자양분 삼아 국회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호중**



**유 옥**  
이사장 · 재단법인 동천

1. 먼저 본 국회토론회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지원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님, 사회적금융포럼 회원기관과 윤호중 의원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제 발표하시는 더함 김효선 변호사님, 동천 이희숙 변호사님,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이원태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님, 전승범 임팩트스퀘어 투자총괄 이사님,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회계사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박지훈 과장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임혜성 과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천이 이 귀한 토론회에 공동주최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제도개선인바, 두 분 발표자의 발표문에는 공익법인 사회투자현황과 문제점, 해외사례, 공익법인 사회투자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등이 정리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상증세법 개정을 통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공익목적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고도성장을 하여 전세계적으로 성장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노인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출산율 끝에서 1위 등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고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난민, 이주민, 탈북민, 저소득층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공익법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한데, 공익법인의 활동이 활성화되려면 소외된 이웃들에게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하여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를 포함한 법제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4. 동천은 2021년 공익법총서 제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및 2022년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를 발간하여 공익재단과 공익법인들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법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방안 등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동천은 2016년 NPO법센터를 설치하여 공익법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익재단법제, 공익법인세제 등 관련 개별 사건에서의 자문과 소송지원 및 입법 지원 등을 진행하여왔고 앞으로 공익재단과 공익법인들이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더욱 적극적이고 규모있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결과물은 아마도 상증세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세법전문가, 국회 입법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상증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과정에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입법은 언제나 지난한 과제인바, 이 토론회가 일회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담론과 제안으로 귀결되어 반드시 입법으로 열매 맺고, 그 입법을 통하여 공익법인의 사회 투자가 활성화 되는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유 옥



**송경용**

이사장 ·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우리나라에는 39,000여 개의 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있습니다. 기부 금액도 예전에 비하면 놀랄 만큼 성장했고, 공익재단, 공익단체의 설립 주체, 운영 목적, 운영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하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커져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불우이웃을 돕는 기본적 역할에 더해 국가나 기업, 사회가 챙길 수 없거나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없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른 관점,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는 소임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절대빈곤 시절의 관행, 관 중심의 개발 시대의 사고방식과 체계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헌신성, 전문성이 더욱 크게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의 ‘공익목적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는 공익법인이 정관에 투·융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투자 및 융자 등의 방식으로 주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 등의 기반 마련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회투자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투자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공익법인도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미국이나 유럽의 재단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경제 활동(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소셜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투자나 지원은 그 자체로 공익적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에 관한 법, 공익법인의 기금운용 개선에 관한 법안이 토론되고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부 문화를 증진하고 공익법인의 전문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높여나가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어려운 발제를 맡아주신 김효선 변호사님, 이희숙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또,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조상미 원장님과 토론자분들, 관심 가져주시는 공익법인 관계자, 전문가, 연구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고, 공익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며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호중 국회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송경용**

# 축사

이재명

당대표 · 더불어민주당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이재명**  
당대표 ·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정감사로 바쁘신 와중에도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윤호중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사회적금융포럼 회원기관, 재단법인 동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눈앞에 놓인 시대입니다. 기술과 경제는 발전을 거듭하며 삶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반면, 부작용과 사회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를 비롯한 기후위기·저출생·지역불균형 등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공익법인 등의 다양한 조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익법인들이 사회투자로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아간다면,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고려하는 투자방식도 이미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공익법인의 사회투자를 제도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회투자 규모도 매년 12% 이상 증가중이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에 관련한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도 공익법인의 사회투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할 시간입니다. 공익법인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 발제자료

김효선

변호사 · 법무법인 더함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 공익법인 사회투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

2024. 10. 31.  
법무법인 더함  
김효선 변호사

## 사회투자의 의미

- 투자는 재무적 수익,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그 영역을 구분

<투자 및 자본의 스펙트럼>

	재무적 가치만 추구	책임	지속가능	영향		영향만 추구
				←	→	
주요 목표	재무수익	투자 가치 보호	가치증진	사회문제 해결		
재무적 가치	시장 수익률 이상의 재무수익 추구			시장 수익률 이하 용인	시장 수익률 이하 추구	해당 없음
사회적 가치	해당 없음	ESG 관련 위험 화 (관리)	적극적으로 ESG 관행 채택	높은 수준의 영향 창출 추구		

WGAA(2014), "Allocating for Impact", Working Group on Asset Allocation(WGAA), Social Impact Investment Taskforce established by the G8, 18면의 A spectrum of capital에 기초하여 정리

## 사회투자의 의미

-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기후위기, 저출생 등 사회문제의 심화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 증가. 그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공익법인 등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조직이 확산되고,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는 투자 주체 또한 생겨남.
- 사회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 SII)란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한 방식.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기업과 조직에게 자본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함.
  - OECD는 사회투자(SII)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에 자본을 제공하면서, 재무적 수익만이 아니라 측정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기대하는 것이라 정의

## 사회투자의 현황

- 글로벌 영향투자 네트워크 GIIN에 따르면, 전세계 사회투자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1조 1,640억달러로 추산
  - 전세계 사회투자 규모는 매년 12%이상 성장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투자 등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됨.
- 영향 투자산업에서 투자자산운용사의 자본 조달 규모 또한 확대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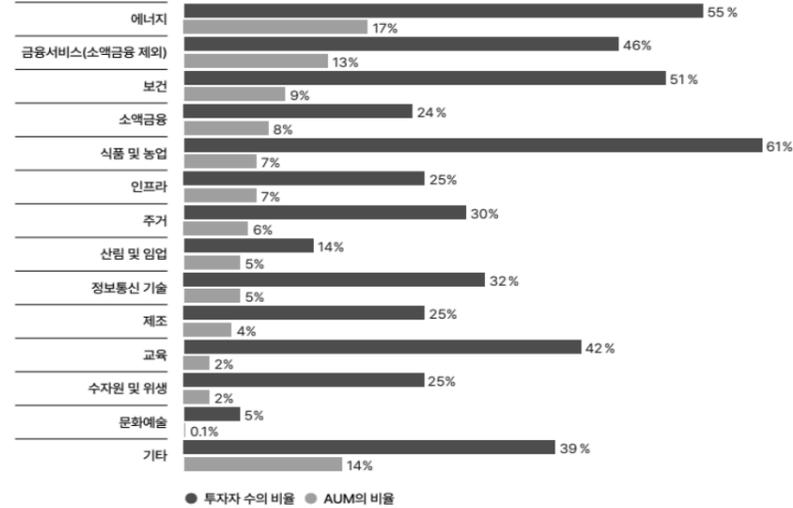


출처: GIIN(2023), 2023 GIINSight 영향 투자자산 배분, 활동 및 성과, 14면

## 사회투자의 현황

- 투자운용자산 규모 기준으로 에너지, 금융서비스, 보건, 소액금융 순으로 자산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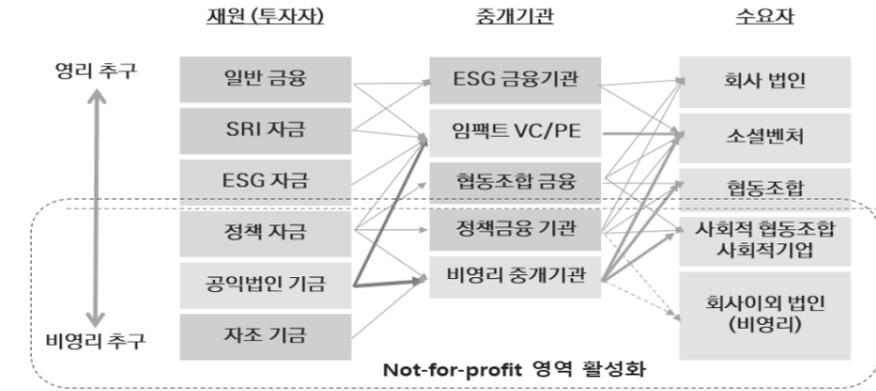
그림4. 섹터별 자산 배분  
관측지 수=303, AUM=1,980억 달러



출처: GIIN(2023), 2023 GIINsight 임팩트 투자자산 배분, 활동 및 성과, 5면

## 공익법인 사회투자의 의의

- 사회투자의 주요한 주체로서 공익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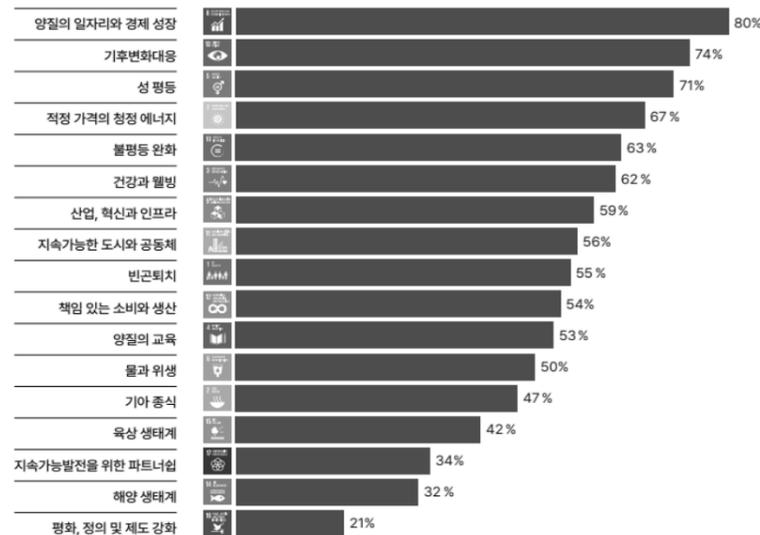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22),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참여 방안 연구, 16면

- 공익법인의 자산운용 다각화, 재정적 지속가능성 강화

## 사회투자의 현황

- 임팩트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 기후행동, 성평등 순으로 나타남

관측지 수=297



출처: GIIN(2023), 2023 GIINsight 임팩트 투자자산 배분, 활동 및 성과, 6면

## 공익법인 사회투자 사례: 미국

- 재무부는 1969년 프로그램 연계 투자(Program-Related Investment, PRI)를 공식 승인하고, 2016년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많은 민간재단이 공익목적을 위한 모험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인
  - 록펠러 재단
  - 포드 재단
-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PRI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PRI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투기적 투자 및 신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미션연계투자(Mission-Related Investment, MRI)를 허용

## 공익법인 사회투자 사례: 영국

- 자선단체의 사회투자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회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선단체법을 개정하여 사회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Charities Act 2011, Charities Act 2016)

- 에스미 페어베른 재단(Esmée Fairbairn Foundation)



- 네스타(NESTA)의 네스트 임팩트 투자(Nesta Impact Investment)



- 자선지원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 CAF)의 Venturesome Impact Fund



## 공익법인 사회투자 법제화의 필요성

- 공익법인의 사회투자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사회투자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식 부족과 오해 해소
  -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혁신적 접근 장려
  - 사회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 모델 구축, 공익법인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대
- 공익법인의 세제 내에서 사회투자에 대한 명확화 필요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회투자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 설정 필요

## 국내 공익법인 사회투자 사례

- 국내의 공익법인 사회투자는 일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뤄짐.
- 일부의 공익법인은 각각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회투자를 수행하고 있음.
  - 행복나눔재단(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청년 사회혁신가 양성)
  - 한국사회투자, 사회가치연대기금(사회적금융 조성 및 지원)
  - 아산나눔재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윤민창의투자재단(기업가정신 확산, 청년 창업지원)
- 직접/간접, 용자·보증만이 아니라 지분투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투자를 수행

감사합니다.

❖ Copyright(c) 2024 더함 All rights reserved.

본 발표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법무법인 더함에 있으며, 사전 허락 없이 복제, 배포할 수 없습니다.

12

# 발제자료

이희숙

상임변호사 · 법무법인 동천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 공익법인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24. 10. 31.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 I. 공익법인 사회투자 국·내외 동향

## 공익법인 사회투자 현황

- 기관 유형별 임팩트 투자 활동(글로벌 사회적 투자자 네트워크(GIIN) 조사)
  - 재단은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자산운용사를 통해 투자하고 있음

투자자 유형별 투자자산운용사들의 2022년 조성 자금 및 2023년 조성 예상 자금

구분	2022 투자 실적		2023 투자 실적		비율(%)
	투자 금액 (백만달러)	거래 건 수	투자 금액 (백만달러)	거래 건 수	
총합	4,007	282	400	2,080	175
기관투자기관	16,124	1,049	189	6,729	259
기부금펀드	86	15	3	45	3
한미투자펀드	218	256	17	1,280	18
재단	1,991	435	11	885	11
투자자산운용사	3,167	6,127	35	23,856	30
연금 및 보험사	1,793	185	90	2,005	100
합계	56,087	8,329	-	36,890	-

○ 글로벌 Top30 자선재단 분석 결과 30개 기관 중 14곳(47%)이 임팩트 투자 참여  
(트리플라이트, 글로벌 자선재단의 임팩트 투자 지형도, 2024. 3. 28.)

<출처:2023 GIINSIGHT 시리즈 한국어판>

파이낸셜뉴스

증권 > 증권일반

### 엑세스바이오, 빌게이츠재단의 GHIF(글로벌헬스투자펀드)로 부터 8백만 달러 투자 유치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조성한 GHIF펀드는 1억800만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 펀드로, 세계 보건 향상을 목표로 조성됐다. GHIF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투자함으로써 백신 및 진단기기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3 국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건의료에 앞장서고 있다.(파이낸셜뉴스, '16. 3. 16.)

## 미국 PRI 제도

- 1969년 조세개혁법을 통해 민간재단의 5% 의무지출 규제 입법화: 매년 재단 자산(면세 목적 자산 제외)의 공정시장가치 5% 이상 금액을 적격 분배 의무
- 적격 분배에는 재단 공익목적 활동, 자선목적 기부, 자선활동, 관련행정비용, **프로그램연계투자(PRI)** 등이 포함됨
- 5% 분배 의무는 장기적으로 자산 고갈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단의 PRI투자 확대
- PRI 적격 분배 요건: ① 투자 목적이 재단 목적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함 ② 재무적 수익이 중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됨 ③ 선거활동이나 로비활동에 관련되어서는 안됨  
(IRC § 4944; 26 CFR 53.4944-3)

(PRI 예시) 저소득층 학생에게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제공  
**비영리 저소득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고위험 투자**

합리적인 이자율로 상업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의 구성원이 소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실업 주민에게 고용·교육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저소득 지역의 기업에 투자  
지역 사회 문제 대응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투자

- IRS Form990 공시
- 주식보유비율 규제 예외 (의결권 있는 주식 20%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도 면세)

## 영국 자선단체법 사회투자

- Charities Act(Protection and Social Investment) 2016 PART 14A SOCIAL INVESTMENTS
- 292A 사회투자 정의
  - 자선단체의 목적을 직접 증진하면서 자선 단체에 대한 재정적 수익을 높이는 활동
  - 용자, 보증, 지분투자 등
- 292B 사회투자 권한: 법인 자선단체/ 비법인 자선단체는 이사의 사회 투자 가능
- 영구 기부금(permanent endowment)으로 투자 금지
- 292C 수탁자의 의무: 자선단체의 이사는 사회 투자를 하기 전에 모든 상황에서 제안된 사회 투자에 대한 조언을 얻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조언을 고려함, 사회투자가 자선단체의 이익이 되는지 스스로 확인
- 자선위원회 감독

## 국내 공익법인 사회 투자의 어려움

- 상증세법상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으로 인해 출자 방식의 투자 제한
- 사회투자는 목적사업인지 수익사업인지, 목적사업으로 허용되는지 불분명하여 활성화 저해, 회계 관리의 어려움
- 사회투자기금 모금에 있어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 불가
- 임금 제한 규정으로 인한 전문가 채용의 어려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투자 경험 공익법인 인터뷰 조사〉

## 국내 공익법인의 사회 투자

- 2021년 국내 사회적 금융 규모는 6,000억 원으로 추정. 비영리 민간기금 용자가 135억 원 가량 임('22,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공익법인이 사회적금융 주요 투자자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2% 비율에 불과하여 활성화가 필요함
- 기업공익재단, 공익목적투자 사례
 

한국타이어나눔재단, 2016년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한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조성(총 60억 원) → (사)나눔과미래에 무이자 장기대출 → (사)나눔과미래는 위 기금을 토대로 서울시 기금 100억 원 추가 유치하여 160억 원 기금 운영 → 사회주택 공급 사회적경제조직 및 입주민에게 총 215억 원 지원(대출 포함), 금융비용 절감, 고용창출효과, 주거비절감효과 등 총 성과금액 168억 원으로 추산



## II. 공익법인 사회투자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

### □ 공익법인의 공익목적투자

- 공익법인: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함 (상속세·증여세 면세, 세액공제, 손금산입 등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익목적투자: 공익법인이 수익 창출이나 자산 가치 상승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회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공익목적투자”로 간주하고, 활성화를 위한 혜택 부여
  - 투자 목적: 공익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 투자 대상: 사회 가치 창출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자 (협동조합 포함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 (공익법인, 공익단체 포함됨)
  - 투자 방법: 지분 투자, 융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투자 등(넓은 의미의 투자는 지분투자, 융자, 보증, 출연 등을 포함하나, 출연은 기존 법제도에 따르므로 제외함. 보증은 공익법인의 채무 부담이므로 제외함)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사용 의무

###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등 의무

-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및 그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함(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
- 공익목적투자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인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인지 실무상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관 목적사업에 투·융자나 기금사업이 명확히 있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공익법인 회계기준으로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은 수익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정관에 투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위 경우에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에 반하지는 아니함. 다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수익사업용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고, 법적 리스크 부담으로 인해 공익목적투자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면서 무이자 대출 등으로 수익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여 공익목적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익목적투자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음. 공익목적투자 방법은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공익법인 등에 대한 융자, 투자로 하면서 구체적인 투자 유형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사용 의무

-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여 공익목적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익목적투자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공익목적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 중소기업자(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공익법인 등(공익법인, 공익단체)에 대한 융자 또는 투자로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다음 각 목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공익목적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의 공익법인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 또는 투자하는 공익목적투자를 포함한다.)</li> <li>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li> </ul>

##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 의무

### □ 운용소득 80% 사용 의무

-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8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제5호 전문,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공익목적투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수익금을 공익목적투자에 재투자할 수는 없음. 정관 변경을 통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공익목적투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재투자하는 방법이 있으나, 주무관청의 재량인 허가를 받기가 용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여 공익목적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운용소득 규정 개정 없이도 공익목적투자의 수익으로 공익목적재투자 가능함

## 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 지출 규제

### □ 공익법인 의무 지출 규제

-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주식 10%를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는 3%)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이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서 제외됨(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 공익법인의 공익 목적 투자는 안정적 운영이나 수익 창출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공익 목적을 위해 투자하는 점을 고려하여 의무 지출 사용에 포함하는 법개정 필요함

## 공익목적투자 공시

### □ 공익법인 회계기준, 공시

-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공익법인의 공익목적투자는 회계기준상 공익목적사업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산임. 안정적 운영이나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니므로 손실 가능성이 높음. 위 성격을 정확히 공시되지 않는 경우 방만한 투자나 운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음
- 상증세법에 공익목적투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공익목적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자 성격에 따른 투명한 운영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상증세법 개정 후 공익법인 회계기준 등 개정 추진 필요

## 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 지출 규제

현 행	개 정 안
<p>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 가액 불산입등)</p> <p>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p> <p>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p>	<p>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 가액 불산입등)</p> <p>② (현행과 같음)</p> <p>7</p> <p>.....(「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단 제1호 가목의 공익목적투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사용한 경우</p>

## 공익법인 주식보유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주식 보유 제한  
공익법인은 최대 10% 내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을 수 있으며,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주식 취득 비율 제한이 적용됨(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즉, 공익법인은 공익목적투자로 사회적기업 등에 지분 투자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시 10% 초과 주식 취득이 불가함 (의결권 미행사시 20%)
-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보유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익목적투자의 경우 우회 지배 우려가 없으므로 주식 보유 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지분 투자를 확대하고, 공익법인이 적극적으로 의결에 관여하여 투자기업의 사회적가치 추구를 견인할 필요 있음. 상증세법 제48조 제2호는 주식 보유 비율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예외 사항에 공익목적투자를 포함하는 방안 있음

## 공익법인 주식보유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주식 보유 제한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 가액 불산입등)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 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 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 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 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 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제 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 으로 본다)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및 공익법인등이 제1 호 가목에 따른 공익목적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 공익법인 임직원 급여 제한

- 공익법인 임직원 급여 제한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과 배당소득 에 대해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받는 소득이 8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인건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법인세법시행령 제56 조 제11항)
- 공익목적투자뿐 아니라 전문적인 공익법인 운영을 위하여 임직원 급여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2012년 2월에 신설된 조항이므로 이후 12년 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한도 조정이 필요함. 2012 년 2월 대비 2024년 7월은 1.246배 물가가 상승하였으므로(CPI소비자물가지수, 화폐가치 계산) 20% 이상 한도 상향할 필요 있음(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공익법인 주식보유제한

- 공정거래법 기업집단 편입  
기업, 기업공익재단 등이 공익목적투자로 인해 사회적기업 등에 최대출자자로서 30% 이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집단에 포함됨(공정거래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위 제한으로 인해 대기업 공익재단은 사실상 투자 범위를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 기업집단편입 문제로 대기업 등의 공익목적투자 규모가 제한되고 있으나, 공익목적투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출자자로서 실질적지배를 하고 있다면, 입법을 통해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공익목적투자 법인세 감면

### □ 공익목적투자 법인세

- 공익목적투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10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산입가능하지만, 그 밖의 수익은 50%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산입됨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 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1. 다음 각 목의 금액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 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 한 이자금액

- 공익목적투자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뿐 아니라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등의 소득이 예상되며, 그 성격이 유사함을 고려할 때,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산입되어 전액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상속세법 개정 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라목 신설 추진 필요

# 토론자료

이원태

사무국장 · 함께일하는재단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 공익법인 제도현황 및 개선사항

- 이원태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 □ 융자방식의 목적 사업 수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21.]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4항.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를 준용하여 공익법인은 취약계층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위의 내용과 같이 정관에 목적사업 범위, 용어 명시 기준을 근거로 함
- 금융업 방식의 일반 대부사업으로 간주하여 상환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간주하여 회계 감사 진행시 수익사업으로 해석 분류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목적사업에 대한 설명과 관련 자료 증빙을 통한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취약계층 대상 소액신용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됨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 □ 임팩트 투자사업의 실행 측면 경우

- 임팩트 투자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등록 제도를 통해 등록절차를 통해 자격 획득이 필수 (아래 내용 참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벤처투자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4장 창업기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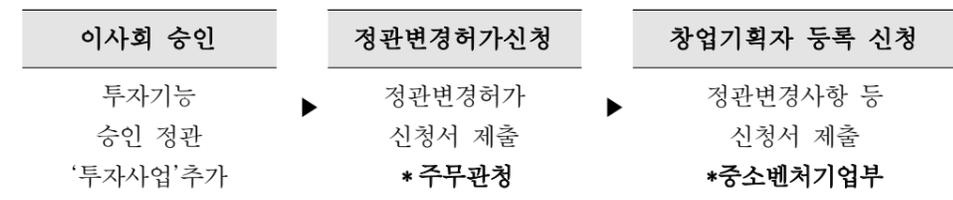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2. 28.>

1. 초기창업기업의 선발 및 전문보육
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정관 및 등본의 목적사업에 **창업기획자 활동(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 등)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것**  
『창업기획자 등록 절차 매뉴얼』 참조

- 창업기획자 등록 절차 매뉴얼을 준용하여 자격획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정관 목적사업에 스타트업(창업자) 투자 관련 문구 명시 필요(아래 내용 참고)
- 먼저 정관에 위의 내용의 문구 준용하여 변경 및 추가하여 기관 내부로는 이사회를 통한 정관 변경 이사회 승인, 이후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승인 절차 선행되어야 함
- 이후 정관 변경이 이뤄지고 변경된 정관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등록 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 필요
- 즉, 목적사업의 임팩트 투자 사업을 신설할 경우 최소 이사회, 주무관청, 해당 부처 등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 구조와 프로세스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또한, 특성상 임팩트 투자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투자와는 다르게 사회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셜벤처나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획자 제도를 활용하여 활동하기보다는 임팩트 투자사업의 적합성을 가진 부처나 공공기관을 통한 임팩트 투자 엑셀러레이팅 제도를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

### [투자가능 확대 진행절차]



# 토론자료

## 전승범

이사 · 임팩트스퀘어 투자총괄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 토론문

### 1. 간접투자제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어야 함

- 발제가 공익법인의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졌음.
- 임팩트 투자가 반드시 반드시 주식과 채권에 대한 직접투자 방식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님.
- 펀드 출자 등 간접투자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점이 있음.

#### 1. 전문성 및 효율성

- \* 자금의 운용과 투자실무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음.
- \* 공익법인 내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갖추기 위해 내부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측면에서도 대형 재단법인이 아니고는 한계가 있음.
- \* 투자처를 발굴하고 심사하는 업무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

#### 2. 투자관리의 용이성

- \* 투자처 발굴 및 심사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투자 후 회수가 되는 생애주기를 감안하면 투자후 관리(사후관리)에 95%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됨.
- \* 투자관리는 투자기업의 분야/시장/비즈니스 모델 등의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규모의 효율화가 이뤄질 수 있음.
- \* 투자처의 성장 지원과 사후관리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

- 공익법인은 출자에 대한 의사결정만 이사회 등 공식 심의 기구에서만 결정하면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관리적 측면의 용이성의 높아짐.

### 2. 투자 방법론의 다양성 고려

- 공익법인의 투자가 이전 마이크로 크레딧 혹은 대여금(대출)을 넘어 지분투자로 확대되어 논의되고 있는 점은 매우 의미가 높다고 보고 있음.
- 단 임팩트 투자가 스타트업 혹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중심으로만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공익법인의 투자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고려해 볼 수 있음.
  - \* 복합금융: 부동산 개발을 통한 청년 / 주거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경우, 프로젝트 금융(PF)등에 공익법인이 장기저리 자금을 우선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자금 공급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돕는 복합금융(트렌치 구조)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음.
    - 부동산 개발 투자를 투기적 시각으로 보면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유형의 투자 방법론도 함께 고려해야 함.
    - 해외 임팩트 투자의 70%는 사회주택 등 PF 를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뤄지고 있음.
  - \* 상장기업투자: 비록 수가 많지는 않지만 국내에는 노을과 같은 소셜벤처의 상장사례가 존재함. 향후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장사례가 늘어날 수록 공익법인의 사회적/공익적 목적에 부합한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공개시장에서 공모도의 대상에 소셜벤처가 포함되는 경우 가격방어를 위해 매도 물량을 받아줄 자금주체가 필요함.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연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경우, 공익법인의 자금 개입에 대해 열어둘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투자: 사회복지 법인은 지분취득이 불가함. 고유목적사업으로의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출자도 포함되었으면 함.

### 3. 인내자본으로의 공익법인의 투자

- 발제를 통해 고무적인 부분은 고유목적 사업이 된다면 손실 총당에 대한 처리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임.
- 임팩트 펀드를 운용하는 담당자로서 재단의 출자 담당자와 출자 논의할 때 겪는 가장 어려운 화두가 손실에 대한 우려임.
- 모태펀드도 운용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우선손실을 모태펀드가 총당함으로써 민간의 자금유치에 유인책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공익법인이 사회적목적으로 손실의 비용처리가 가능해지는 경우, 민간부문의 임팩트 투자로 자금유입이 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함.

2024 년 10 월 31 일

주식회사 임팩트스퀘어 투자총괄 / 이사 전승범

# 토론자료

**최호윤**

회계사 · 회계법인 더함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 전체
  - 공익법인: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아닌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 사회투자: '재무적 수익' + '사회적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투자(지분, 용자, 지원)
- 1. 발제문은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사회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제약조건을 개정/개선하는 취지로 제안
  - 기존 상증법이 규정한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 규정에 파격을 요구하는 개선사항 이므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기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회투자(투융자 사업)재원으로 사용한 후, 원본 자금이 회수되었을 때 회수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같이 고려되어야 제약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됨.
- 2. 공익목적투자자 수익사업
  - 현행 세법 규정상 정관에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더라도 해당사업이 법인세법이 열거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이면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회투자로 발생한 투자수익을 재투자하려면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사용해야 하므로 투자수익을 재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공익목적투자사업을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수익사업범위에서 제외(유사한 사례: 마이크로크레딧 소액대출사업)하면 공익목적투자를 공익목적사업으로 열거하는 것에 비해 다음의 관점에서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됨
    - 투자금액이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이 아니므로 의무지출 규제조항인 수익용재산의 1%(또는 3%) 판단 기준금액에서 제외됨
    - 출연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획득한 투자수익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율을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어짐
- 3. 공익법인회계기준 공시
  -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해당하면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분류하므로,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 이슈가 아니라 공익법인이 사회투자 관련내용을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이슈로 판단됨

- 4. 주식보유(지분비율) 제한
  - 현행 상증세법은 '**직접 투자/보유**'지분비율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투자조합 방식 등을 활용한 간접투자를 하면 투자지분비율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 현행 상증세법은 '**의결권 있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만 규제하고 있으므로 공익목적투자자 취득한 (보통주)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지분 취득비율에 제한이 없어진다. 의결권제한 사항은 사회투자가 사회적가치창출과 **재무적이익 획득**만 고려할 것 인지 아니면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영의사결정에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5. 임직원 급여제한
  - 급여제한 규정은 1)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증법 규정에 따른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2) 대상이 되는 장학재단의 경우 장학금지출비율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규정으므로 장학재단이 사회투자를 집행하면 장학금지출비율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며, 3)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수행하는 사회투자를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 → 이 부분은 기본재산 편입에 외 사항에서도 동일함
- 6. 기부금품법 적용
  - 공익법인이 사회투자에 필요한 규모의 자금을 대중모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므로 사업비가 아닌 사업재원 모금을 제한하는 기부금품법 제약사항이 사회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 보임.

# 토론자료

박지훈

과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 MEMO

---

# MEMO

---

# 토론자료

임혜성

과장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 MEMO

---

# MEMO

---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윤호중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48호  
연락처 | 02-784-4961